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2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6. 3. 28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결정(변경)취지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
- 위 치 : 서구 검암동 517-9
-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 -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 -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				
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분할가능 획지수	가구 번호	가구면적 (㎡)	획지		분할가능 획지수
			위치	면적(㎡)				위치	면적(㎡)	
1	54	4,122.2	8	1,166.4	5	54	4,122.2	8-1	677.6	3
								8-2	488.8	2

※ 획지분할 가능선(분할가능 획지면적) 변경

(8-1획지 : $695.2\text{m}^2 \rightarrow 677.6\text{m}^2$ (감17.6 m^2) / 8-2획지 : $471.2\text{m}^2 \rightarrow 488.8\text{m}^2$ (증 17.6 m^2)

○ 단독주택용지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54	8 → 8-1, 8-2	획지분할 가능선 위치변경 및 획지분할	- 주차장 면적 확보를 위한 분할가능선 변경

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
선에 관한 도시계획결정(변경) 조서 (변경 없음)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게재 생략)

